

Korean Tax Update

December 2018, Issue 54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전문보기]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등록자는 60%로 하향 조정하고, 적격 P2P 투자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며(2020년부터 1년간 시행),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을 철회하는 등의 수정사항이 반영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2018. 12. 7.(금)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현행규정 상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 외에는 수납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하여 대리매수(물납자의 가족 및 관련 법인 등)를 통해 국세물납 제도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을 물납자의 민법상 가족 및 관계법인으로 규정하여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초 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임.

국세청,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전문보기]

'19.1.1.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됨.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2019년1월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전문보기]

내년 1월 1일부터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됨.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상기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수년간 이해관계 벽에 가로막혀 개선되지 못하던 외환산업 內 업권간 장벽을 해소하는 등 핵심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외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그간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 업무를 소액(건당 3천불, 年 3만불)에 대해 증권사·카드사에 허용하면서, 소액 송금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카드사까지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이 포함됨.

[예규·판례]

[판례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 두 30569 판결 외 1 건

-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임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이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판례2] 장학재단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 두 50037 판결

-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정관 등에 장학사업을 그 목적사업 중 하나로 분명히 기재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원고의 기본 재산 중 50%를 넘는 5,084,863,159원 상당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이후 곧바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어업인 자녀들의 기숙사 용도로 제공되어 원고의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되어 오고 있고, 장학금 지원사업 등 장학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수행하고 있는 원고는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면제조항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

[판례3]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 두 1110 판결

-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도록 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그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조 제3항이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1항의 상속재산에는 구 상속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역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제4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함.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그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과 더불어 상속세 특유의 과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인 만큼,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4] 관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 두 56120 판결

-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았으나 가산세를 환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관세법령은 부과징수의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제1호), 관세법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수입신고 이후의 감면신청을 허용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고, 설령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다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는 없음.

[판례5] 신설법인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발기인이 신설 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속세법 제2조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 두 40941 판결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락앤락의 법인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으로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음.

[판례6] 세대를 건너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 두 54275 판결

- 구 상증세법 제28조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중과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인의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그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취지인 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구 상증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되었더라도, 그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수증자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므로써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세 회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의 효과만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증자 겸 상속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된 위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과 아울러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판례7]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 두 128 판결

- Golden Quarter의 경우, 원고가 2001년과 2002년에 모든 주식을 자신의 실명으로 직접 소유하고 있었을 뿐 다층적 지배구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Virtual Capital의 경우도 통상적인 투자구조의 형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홍콩법인이 홍콩 세무당국에 실제 매출액의 약 1%만을 수입으로 신고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연도 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행위에 부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고 내용에 관한 기초장부 등과 같은 근거 서류를 조작하거나 작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례8]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 두 36004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례1] 해외 자회사의 제품 제조·판매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 및 제3자 특허권사용료를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제조기술사용료 수입에만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7 중 2594, 2018. 10. 24.

- 익금 배분 자체가 임의적인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인 점, 쟁점비용에 대한 수익·비용 대응과 그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볼 때, 쟁점비용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며, 비용을 배분하는 기준은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전체 이익률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2]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적정 여부

조심 2017 부 5209, 2018. 10. 31.

- 신탁법 제22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분양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계좌로 수납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환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체납세액은 신탁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세액은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

청이 쟁점채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3] 공동광고비 분담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사업연도 중 적격합병한 경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선부담한 피합병법인 몫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 중 0292, 2018. 11. 1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15항 등에서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등의 경우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공동광고비 정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합병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합병법인과 적격합병을 함에 따라 동 법인으로부터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공동광고비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수측면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세율이 적용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판단에 대한 사안

조심 2018 서 2569, 2018. 11. 16.

-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차등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례5]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출자한도규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0959, 2018. 11. 16.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인적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설령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그 후에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고, 관련 법령에서 이를 설립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에 그 설립이 당연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면 충분하지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례6]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정 여부

조심 2018 서 1188, 2018. 11. 19.

-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 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면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대법원 2003두 13083)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을 통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청구인의 회생절차상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법률자문수수료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생절차상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한 부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7] 쟁점신탁재산의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7 서 4307, 2018. 11. 19.

-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쟁점판결')에서 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 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자,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처분청은 쟁점판결 이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이하 '쟁점질의') 회신일(2017.9.1.) 이전인 2017.7.6. 쟁점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질의 회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은 대법원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당초,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변경한 것인바, 쟁점질의 회신일 전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8] 쟁점 아일랜드 자회사가 쟁점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 중 3697, 2018. 11. 19.

- 쟁점 아일랜드 자회사(쟁점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보면 2012~2015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단 세 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전업으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쟁점계약의 목적물인 햅틱 기술 관련 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할 능력이 없는 세무·재무담당 직원이며, 쟁점 법인의 사무공간은 회계법인 내에 위치한 약 2평 면적의 사무실 내에 PC 1대와 책상 한 점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또한 쟁점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달러에 불과하고, 유형 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미국 모회사는 쟁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원천징수를 회피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아일랜드 자회사가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례9] BTX공정의 부산물인 석유제품 C9+로 MFO(Mixed Fuel Oil)를 제조한 후 이를 가스터빈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조심 2017 광 1351, 2018. 11. 20.

-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이 모두 청구법인 공장 내에서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쟁점고시 별표 제5호에서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보일러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판매되는 것에 한정한 입법취지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처별로 엄격한 품질기준을 두기 위한 것으로, 「개별소비세법」과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문리해석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에서 ‘용도’는 그 물품의 성상 중 하나로서의 ‘용도’, 즉,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일뿐, 그 물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개별소비세는 특정물품이 제조되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반출된 다음 그 물품이 실제 사용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그 물품을 장차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와 같은 가변적인 요소에 의해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면 개별소비세의 과세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심판례10] 법인세법에 규정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징수한도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1304, 2018. 11. 23.

-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간배당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 및 부과지한 사안에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의 입법미비로 인하여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5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징수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구「지방세법」 및 개정「지방세법」에서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에 임의로 징수한도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심판례11]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의료기관에게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용역 결과를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비를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그 대가 전부를 청구법인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서 0394, 2018. 11. 23.

- 2015.2.3. 개정(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보건업 중 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동 조항을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유추해석할 경우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한 위 신설 조항이 형해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신설 조항을 의료기관에게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 시행 이후 청구법인이 공급한 임상시험 및 그 관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12] 자동차매매법인의 매매용 중고자동차가 지특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일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1804, 2018. 11. 26.

-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별개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납부하여야 하는 과점주주 취득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심판례13]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자가 생산제품을 무상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소 3634, 2018. 12. 03.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유한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임직원들에게 자기생산 재화인 쟁점명절선물을 사용·소비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여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사용인 등이 최종소비자가 되어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명절선물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1]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 2016-878, 2018. 11. 08.

-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협약기간 동안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시설물의 건설비 상당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협약기간 동안 사용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료 상당의 반대급부를 지급받는 것은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을 부동산임대 행위로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적 거래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운영권 부여를 부동산임대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예규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부동산-0233, 2018. 9. 19.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예규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210, 2018. 11. 12.

- 차주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확약기관)이 미상환 금액만큼 차주에게 대출할 것을 차주 및 대주에게 확약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구비서류로서 대출확약서를 교부함에 따라 대출실행일에 차주로부터 대출확약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차주는 대출확약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 해당 대출확약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8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